교습비조정명령취소

소송종류	행정소송	법 원 명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 [1심]	사건유형	자격면허인가등록
원 고	□□□ 외 5명	피 고	인천광역시○○교육지원청교육장
판결선고일	[1심]2019. 1. 18. 원고승소	비 고	
사건개요	❍ 원고들은 인천 ○○구 또는 ○○구에서 아래와 같이 독서실 (이하 '이 사건 각 독서실'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원고들은 2017. 3. 28. 또는 2017. 4. 5.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독서실 교습비 변경등록신청을 하였음 (이하 원고들이 변경등록신청한 교습비를 '신청 교습비'라 한다) ❍ 피고는 2017. 12. 7.자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7. 12. 26. 원고들의 신청 교습비가 과다하다고 판단하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고 한다) 제15조 제6항 및 구 학원법 시행령(2018. 12. 18. 대통령령 제29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2에 근거하여, 원고들에게 1일 교습비를 7,000원, 1개월 교습비를 120,000원으로 변경하라는 내용의 교습비 조정명령을 하였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조정명령상의 교습비를 '조정 교습비'라 한다).		
주 문	1. 피고가 2017. 12. 26. 원고들에게 한 각 교습비 조정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판결이유	❍ 관계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교습비등 조정명령제도의 입법 취지, 위와 같은 학원법의 개정 경위, 조정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받는 제재의 내용과 '과다하다'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너무 많다) 및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에서 차지하는 개인의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등을 고려하면, 교습비등 조정명령의 요건으로서 '교습비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때'란 교습비등이 그 교습내용, 교습시간 등에 비추어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 교습비 수준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초과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거나 사교육의 균등기회 보장을 본질적으로 제한할 정도에 이른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 그리고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므로, 학원의 교습비등이 해당 학원의 적정한 교습비등 수준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초과하여 과다하다는 점은 행정청인 피고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함 ❍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신청 교습비가 적정 교습비 수준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초과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거나 사교육의 균등기회 보장을 본질적으로 제한할 정도에 이르러 '교습비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원고들의 신청 교습비가 적정 교습비 수준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초과하는 수준이라거나 사교육의 균등기회 보장을 본질적으로 제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움.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